

문서번호	여성가족과-41139
결재일자	2015. 12. 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여성복지담당	여성가족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
조수연	신정미	김화복	도일환	12/08 김병환	
협 조	행정지원과장 인사담당			홍동석 서경택	

2015년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



2015. 12.

교육문화복지국
여성가족과

2015년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

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북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I 추진 배경 및 근거

□ 추진배경

- 최근 공무원의 여성폭력 관련 범죄 증가 발생으로 인한 적극적 예방 대책 마련 필요
- 성폭력·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
-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

□ 추진근거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5조(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의 방지 등)
- 201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여성가족부 지침)

II 추진 방향

- 업무효율 고려 및 전직원 교육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 활용
-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% 추진
- 예방교육 실적으로 간부 직원 교육 참여율 별도 평가됨에 따라 6급이상 간부 교육 이수 철저

Ⅲ 세부 추진계획

□ 교육대상 : 성북구 전직원(구본청, 동 주민센터, 보건소)

※ **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법령상 전직원 의무교육**

□ 교육기간 : 2015. 12. 14. ~ 2015. 12. 28. (2주간)

□ 교육횟수 : 연 1회, 각 1시간 실시

※ 성폭력·가정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·성매매예방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,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각각 1시간(총 4시간) 이상 실시하여야 함

□ 교육내용

○ 성폭력 없는 안전사회 만들기(성폭력 예방교육)

-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소개 및 반성폭력 감수성을 키워 성폭력 없는 조직 분위기 조성

○ 가정폭력, 제대로 인지하기(가정폭력 예방교육)

- 가정폭력 예방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여 가정폭력 근절에 관심 고취

□ 교육방법 : 성북 상상마루 위탁 사이버 교육

○ 우리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북상상마루의 '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인권교육' 강좌 중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분을 2차시로 나누어 강좌 개설

○ 개인별로 학습사이트(<http://www.edubion.co.kr/sb>)에 접속하여 수강

- 강좌명 : 2015년 성북구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
- 강 사 : 손경이(한국양성평등진흥원 소속)

Ⅳ 행정 사항

○ 전 부 서 : '15년 12월 말까지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학습 실시

○ 행정지원과 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상시학습시간 인정(각1시간)

○ 여성가족과 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, 결과 제출 및 예방교육 통합 관리시스템 실적입력. 끝.